

2024. 3. 6.(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난안전관리실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재해예방과장

한 광 모

2133-8200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7쪽

산업재해예방팀장

오 성 균

2133-9561

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 법 전면 시행 발맞춰...50인 미만 민간 사업장 대상 3월~5월까지 25개 자치구별 설명회
- 의무사항 교육 및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정부 지원 사업 소개로 중대재해 대응역량 강화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자치구 등 5개 기관 협력 추진
- 3.6.(수) 중구 신당누리센터에서 첫 설명회...이외 24개 자치구는 교육일정 확정 후 안내

- 중소기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6일(수)부터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설명회를 여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서울시가 최초다.
- 올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16만 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법 시행에 앞서 시가 지난해 9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56%)'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애로사항으로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37%)'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돼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전문인력 부족(26.1%), 예산부족(1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에서 구체적 의무사항을 알기 어려워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이에 시는 서울 소재 5인 이상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25개 자치구별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한다.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중소기업중앙회 ▲ 대한상공회의소 및 자치구 등 5개 기관과 협력해 추진하며,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자치구별 1회씩 설명회를 개최하고, 장소별 수용 인원에 따라 회차당 최대 100~200명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등을 통해 기초 이론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설명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사업도 적극 알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산업안전 대진단'이란,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 83만 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 진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 이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인된 전문 강사가 맡아서 진행한다.

- 첫 설명회는 3월 6일(수) 오후 2시 30분 중구 신당누리센터 대강당 (중구 다산로 33길 3)에서 개최한다. 안전보건교육포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중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는 교육 일정 확정 후, 자치구별 누리집과 소식지 등을 통해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 중구에서 열리는 설명회는 안전보건교육포털 누리집 > 회원가입 > 교육과정에 '중구청' 검색 > 교육신청 순서로 신청할 수 있다.
 - 안전보건교육포털 누리집 주소 : <https://edu.kosha.or.kr/headquarter>

- 이외에도 시는 민간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무료 컨설팅과 전문인력양성 등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안전보건 전문가,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기술교육원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 과정을 운영해 안전전문인력을 양성('23~'26년, 554명)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포스터, 업종별 리플릿(광고지) 등 홍보물을 자치구·소상공인회 등 유관 단체에 배부해 법 전면 시행을 알리고 있다.

-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산업안전대진단과 같은 양질의 정부 지원 사업을 중소기업장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소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차원의 지원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유관기관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자치구별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일정 현황

연번	자치구	교육 실시일	교육 장소 (교육장 주소)
1	중구	3월 6일(수) / 14:30 ~ 16:30	중구 신당누리센터 대강당 * 중구 다산로 33길 3
2	종로구	3월 예정	종로구민회관 * 종로구 지봉로 5길 7-5
3	노원구	3월 예정	노원구청 대강당 *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2층
4	은평구	3월 예정	은평구청 은평홀 * 은평구 은평로 195
5	서대문구	3월 예정	서대문구청 대강당 * 서대문구 연희로 248, 6층
6	영등포구	3월 예정	영등포구청 별관 * 영등포구 당산로 123
7	관악구	3월 예정	관악구청 대강당 * 관악구 관악로 145
8	서초구	3월 예정	반포심산아트홀 * 서초구 사평대로 55(반포동114-3)
9	도봉구	4월 예정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 * 도봉구 마들로 656
10	동대문구	4월 예정	동대문구 다목적강당 *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11	양천구	4월 예정	양천구 해누리홀 * 양천구 목동동로 105, 3층
12	강서구	4월 예정	강서구 평생학습관 * 강서구 공항대로 615
13	구로구	4월 예정	구로구 본관 5층 강당 * 구로구 마사산로 245
14	동작구	4월 예정	동작구 문화복지센터 *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15	강남구	4월 예정	청담 평생학습관 * 강남구 학동로 67길 11
16	송파구	4월 예정	송파구청 대강당 *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4층
17	강동구	4월 예정	강동구청 대강당 * 강동구 성내로 25
18	금천구	5월 예정	금천구청 대강당 *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12층
19	마포구	5월 예정	마포구청 대강당 * 마포구 월드컵로 212
20	강북구	5월 예정	강북구청 대강당 * 강북구 도봉로 89길 13
21	성북구	5월 예정	성북구청 다목적홀 * 성북구 보문로 168
22	중랑구	5월 예정	중랑구청 대강당 * 중랑구 봉화산로 179
23	광진구	5월 예정	광진구청 대강당 * 광진구 자양동 777
24	성동구	5월 예정	성동구청 대강당 * 성동구 행당동7
25	용산구	5월 예정	용산구청 대회의실 *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지하 2층

※ 자치구 상황에 따라 교육 일정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음



중대재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 50인 미만 사업장, 50억원 미만 공사장까지 확대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중대산업재해

-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사업장' 전체(공사장 포함)

중대시민재해

- 원료·제조물(식품, 의료기기 등)
- 공공이용시설(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 공공교통수단(철도, 지하철, 시외버스 등)

▶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의무)

중대산업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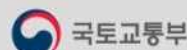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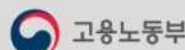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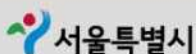
- 안전보건 목표, 경영방침 수립
- 종사자 안전보건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확보
- 종사자 참여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제거·통제 방안 마련
→ 재해 발생 시 반드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중대시민재해

- 충분한 인력과 예산으로 안전관리
- 꾸준한 점검으로 재해 예방
- 시설·사업장 안전계획 수립과 이행
- 위험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준수

▶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 및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 서울특별시 <https://news.seoul.go.kr/safe/>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http://www.koshasafety.co.kr>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 환경부 <http://www.me.go.kr/>
- 소방청 <https://www.nfa.go.kr/>

어떤 경우에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나요?

중대시민재해 사례

유형1

공중이용시설
(심풍백화점 붕괴사고)

다중이용시설의 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사고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의 중대한 부실로 인한 붕괴사고로 다수 인명피해 발생 (사망 502명, 실종 6명, 부상 937명)

유형2

공중교통수단
(세월호 침몰사고)

여객선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사고
선박 관리 소홀과 사고 후 승객 대피·구조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 발생 (사망 299명, 실종 6명, 부상 152명)

유형3

원료·제조물
(음식점 식중독 사고)

식재료, 식품의 제조·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사고
오염된 식재료 사용 및 음식물 위생상태 불량으로 식품을 섭취한 시민 1명이 식중독 증세로 사망, 20여명 식중독 증상 발생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업주·경영책임자(대표자)에게 징역,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명 이상 사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소속 법인·기관) 50억 원 이하 벌금
- 10명 이상 부상, 질병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소속 법인·기관) 10억 원 이하 벌금
- 또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자체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 서울특별시 <https://news.seoul.go.kr/safe/>
- 환경부 <http://www.me.go.kr/>
- 소방청 <https://www.nfa.go.kr/>



2024.1.27.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중대시민재해 예방가이드



서울특별시 | 환경부 | 국토교통부

01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복되는 제해사망사고 악순환 '사고 공화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 이제 그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안전한 서울**을 만듭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바로 알고 실천하면 우리 자신을 지키는 **안전망**이 됩니다.

중대시민재해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인명피해(10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질병)가 발생한 재해"

* 사망 1명 이상 / 부상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 질병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이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02 혹시 우리 사업장도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이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원료·제조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 적용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은 무엇일까요?

공중이용시설

- (시설물안전법) 교량, 터널, 유역, 상하수도처리시설, 하천시설 등 총 1만여 시설과 대형건축물 (16층 이상 건축물 등)
- (산내공기질법) 빈민막이 범위 규모 이상인 곳
 - ① 철도역사·버스터미널·공항·항만시설의 대합실
 - ② 대강모임장, 지하도상가
 - ③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 ④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국내 전시시설
 - ⑤ 산내공연장, 실내체육관
 - ⑥ 의료기관, 지하 주차장
 - ⑦ 업무시설, 물 이상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
 - * 공동주택, 오지시설은 제외
- (다중이용업소법) 음식점, 학원, 병의원, 산후조리원, 고사원, 노래방, 유흥주점 등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영업장
- (기타) 10년 이상 된 도로교량(연장 20m이상)·도로터널·철도교량 및 철도터널, 사업장 면적 2,000㎡ 이상의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풍화유형시설의 유기기구(놀이시설)

공중교통수단

지하철, 철도(고속철 포함), 시차버스(고속버스 포함), 항공기, 여객선 등 특정 플랫폼

원료·제조물

독성가스, 농약, 살생물질 뿐만 아니라 식품 등 모든 원료·제조물이 해당합니다.
→ 음식(음식), 의약품·의약품(의약품), 의약)

03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은 기본!
- 기본 인력(사업주·담당직원)으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점검으로 재해예방
- 시설·사업장 위험요인을 정기·수시 점검
- 발견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조치

안전계획을 세우고 지켜요
- 시설·사업장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보수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

위험상황에 대비한 매뉴얼도 미리 준비하세요!
- 위험요인 점검과 대응
- 재해 발생 시 긴급구조, 안전조치, 대피

안전보건 법령은 잘 지키고 계시죠?
- 시설·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지킵니다. (소방위생법, 소방시설법 등)
- 의무교육은 꼭 이수해 주세요.

시설 관리를 도맡하셨다면 한 번 더 안전을 챙겨주세요!
- 수급인이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지, 지급된 비용은 충분한지도 꼭 확인하세요.

✓ 조치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잊지 말고 **5년간 보관**해 주세요!

우리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가요?

적용 대상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24. 1. 27. 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

중대산업재해 범의는?

중상자(중처벌 2조 7호)가

- ① 사망자 1명 이상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내 3명 이상

처벌 내용은?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부상, 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 **부상, 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2024. 1. 27.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24. 1. 27. 부터 법 적용을 받는 곳은 어디인가요?

A1. 업종이나 직종에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법 적용대상이며, 상시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일용 근로자나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도 포함됩니다.

Q2. 안전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할까요?

A2.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해야 할 의무가 없고,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운영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Q3. 정부기관으로 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3. 정부는 중소 사업장(5~50인 미만)을 대상으로 2024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의무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 컨설팅 등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 및 지원 문의) ☎1544-1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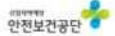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www.koshasafety.co.kr) 참고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강의동영상
- 재정지원 컨설팅 사업 안내



2024.1.27.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

중대산업재해 예방가이드



2024년 산업안전 대진단

산업안전 대진단, 무엇인가요?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5~50인 미만)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자기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왜 해야하나요?

- 1.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궁극적으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어떤 혜택이 있나요?

- ✓ 첫째, 대진단 실시 후 지원신청 사업장은 신속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둘째, 상담 지원센터에서 사업장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셋째,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PC - 모바일로 접속하며, 접속 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주세요.



우편-영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기진단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문의) ☎1544-1133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개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주요 골자인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공단 및 민간기관에서 컨설팅(3회~5회) 제공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299인 이하인 모든 업종 사업장(간설업 제외)

제외사업장

- ① 24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지원 사업장
- ② 22~23년 공단 체계구축 컨설팅 지원 사업장(위탁 포함)
- ③ 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업장 (단, ISO45001 인증 사업장은 신청 가능)
 - * 컨설팅 자부담금 : • (30인 미만) 수수료 부담 없음
 - (30~49인) 수수료 30,000원/회
 - (50인 이상) 120,000원/회

지원방법 및 내용

- ✓ 지원방법 -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송부
- ✓ 문의전화 -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02-6711-2972
- email : ysh0809@koshas.or.kr
- 서울시 120



안전보건교육 지원사업

사업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사업장 자체 교육시 교육 추진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전문강사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교육신청 사업장의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

지원방법 및 내용

- **방 법** - 해당 분야 전문강사가 현장방문 교육 지원
- **내 용** - 작업전 안전점검, 업종별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등 사례중심 교육
- **시 간** - 요청시간(1~2시간)
- **교육비** - 무료
- **신 청** - 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교육신청, 기본교육, 사업장 등 단계지원교육

